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7. 4.(수) 10: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부위원장 (1인)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지침」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32-376)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지침」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사업규모·자금사정·정보보호 노력정도,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한 과태료의 감경·가중 기준 및 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방통위 의결로 동 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10년, ’14년, ’16년에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금년 3월부터 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침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지침의 명칭을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지침」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의 각 금액을 기준금액, 조정금액,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사업자 규모는「1인창조기업법」,「소상공인법」 및「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예정된 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제출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방통위는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사전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과태료의 면제기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 및 제8조로 인한 위반행위와 부도발생, 은행거래 정지, 완전 자본 잠식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말미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위반횟수, 사업규모·자금사정, 위반의 정도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과태료의 감경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자금사정,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노력 정도, 조사 협조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 과태료의 가중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 방해, 위반의 정도 등의 기준들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차등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과태료 가중기준과 위반행위별 세부기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방통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통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 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기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적인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지침은 7월 5일자로 시행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시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조제3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1>의 9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개정안입니다. 제5조(과태료의 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위반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호와 제2호가 있고, 10쪽의 제3호를 봐 주십시오. 제3호는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완전 자본 잠식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서 재정적 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넣은 배경은 재정적 부담능력이 없는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과태료의 가산금과 체납액을 재산압류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연구반에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면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살피셔서 위원회에서

연구반 의견을 개정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굳이 내부 지침으로 면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곽영환 법률자문관**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우리 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지침은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지침은 해당 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타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3호의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완전 자본 잠식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재정적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먼저 과태료의 부과 자체는 강행규정입니다.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서 강행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같이 경제적 능력과 결부된 자도 50% 이내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데에 그치고 그 외에 생계유지 곤란자, 또 사업의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등의 사유는 단지 1년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본 잠식을 들고 있는데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도 출자 전환 등으로 살아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을 때는 결손 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명확한 경제적인 사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 집행을 해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같은 의견이고, 제가 예전에 우리 위원회가 과태료의 부과 유예 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서 행정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법무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사유를 들어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를 들어서 면제 자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법무부에 문의가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주시되 방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시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제5조(과태료의 면제)제1호, 제2호는 그대로 있고, 제3호 이 부분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호를 연구반에서는 자본잠식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면제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법률자문관 말씀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명시적 면제규정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감면해 줄 수 있지만 면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호를 삭제하고자 수정 의결하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법률자문관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에 근거가 있다면 행정기관이 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건처럼 모법 그리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데 우리가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칫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률자문관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안건은 기본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또 과태료 기준과 부과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도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대로 과태료 면제규정 안 제5조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앞서 두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자문관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해 왔는데 이번에 위치정보보호 위반이 또 추가로 된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치정보의 경우에 내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침에 반영한 것이고, 법에는 과태료 부과사항도 위치정보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재량으로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이 지침을 준용해서 해 왔다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의 과태료 부과에 관련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있고 실제로

부과할 때는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 부과지침을 준용해서 했지만 동일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가중 기준,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사무처의 재량을 축소하고 세부적으로 가중·감면 사례들을 명시해서 행정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법률자문관 지적대로 이런 부분 행정청의 재량권으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으니까 내부 지침 중 다른 경우에도 면제조항이 있으면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당장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손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이용자정책국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세부 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상 어느 정도 상세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지금 침해조사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시행령·고시에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고시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규정을 지금 법률자문관 자문대로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다시 살펴서 손 볼 것은 빨리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안건 내용 중에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메가스터디교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33-377)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메가스터디교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7년 7월에 피심인인 메가스터디교육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해 왔고, 금년 2월까지 방통위가 KISA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매출액은 2017년도 기준 2,182억원으로 이 중에서 초·중등 온라인 교육서비스 매출액은 287억원입니다. 개인정보 수집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필수항목으로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수집했고, 약 154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 경로입니다. 피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미상의 해커는 피심인의 직원 신 모가 2017년 7월 17일 10시 43분경부터 피심인의 초·중등 교육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 중인 세션ID를 같은 날 16시 14분경 이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탈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상의 해커는 신 모로부터 탈취한 세션ID를 이용하여 메가스터디교육㈜ 초·중등 교육 관리자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 및 유출할 수 있는 공격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서버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후 미상의 해커는 서버에 업로드한 공격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관리자페이지에 아이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TXT파일로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내역입니다. 피심인이 '엠베스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정보 123만 3,85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입니다. 피심인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가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시스템 관리자페이지의 최대 접속제한 시간을 60분으로 설정하였지만 해커에게 세션ID를 탈취당한 신 모의 소속부서는 실시간으로 고객 요청 건을 파악하기 위해 1분 단위로 자동 로딩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어 세션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10항입니다. 사업자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웹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 등 전문장비를 갖춘 적법하게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의 운영'은 단순히 방화벽 등의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의 업로드를 탐지하는 등 어느 경우라도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와 관련해서 피심인은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가 미흡한 것은 CS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CS 상담원들의 PC에 자동절전 기능 설정으로 최대 3시간 이후에는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토결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이 차단되지 않도록 설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심인은 PC에 자동절전 기능을 설정하여 절전 모드로 진입한 후에 생성된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시 해설서에서는 최대 접속시간은 최소한, 즉 30분 이내로 정하고, 장시간 접속이 필요할 때에는 접속시간 등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봤을 때 상담업무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3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한 것은 규정에서 정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타 제출의견과 검토의견은 <붙임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을 명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초·중등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232억 7,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21를 적용한 4억 8,8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 근거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억 4,400만원을 감경하였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900만원을 감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 과징금은 1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도 병과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고, 이에 따라서 최종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금년 내에 이행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특히 과징금의 적정한 액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3년치 평균 매출액이 232억원, 그것이 2016년까지가 그렇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2,182억원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갑자기 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 부분은 관련 매출액에 한정해서 232억원이라는 것이고, 전체 매출액은 그렇게 많지만 고등 부분 온라인 강의,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수수료, 또 오프라인 교재 매출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관련 매출액이 아니고 연매출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600명이 넘는 직원에 또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원수도 15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탐지시스템을 다 설치했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연매출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사, 그리고 15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교육사이트인데 고객팀장의 세션 ID가 탈취를 당하고 또 자동접속 제한시간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시간 넘게 방치해 두고 있고,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의 요청에 즉각즉각 반응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관리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대형 사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자율교육에 맡기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CPO 포럼이나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메가스터디교육 쪽 입장을 들어보면 방화벽 시스템 또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 전문장비를 갖추어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접근제한·유출 탐지기능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미흡하고,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3시간이나 열어놓았다는 것은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고객팀장의 세션 ID가 탈취당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심인 의견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교육 사이트가 과징금을 우리가 필수적 감경 50%, 이것은 규정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가 감경을 20%나 해야 하는지 저는 반대입니다. 추가 감경사유 20% 정도를 해주는 이유가 자진 신고를 했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진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나 감경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우리가 많이 감경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해 온 것도 아니고 최근에 각광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런 자진 신고, 또 조사 협조에 감경해 주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점점 없애야 합니다. 다 전파가 되어 있고 다 사업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조치는 감경사유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자들 위반사항에 자진 신고, 조사 협조 시 감경해 줬기 때문에 점점 줄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당장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많이 깎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개인정보가 탈취당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방화벽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리자 교육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웹 방화벽 등을 포함해서 디도스(DDoS) 방지시스템까지 솔루션을 설치하는 등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해서는 보안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초·중·등 온라인 교육 가입자는 탈취되었는데 고등학교 가입자들은 탈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중등들과 고등과 별도로 서버나 DB를 달리 운영한, 별도의 회사에서 보안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투자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있어서 해킹당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CPO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유출정보를 보면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메일까지 유출도 7,000건이나 됩니다.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는 100만건이 넘습니다. 감경사유를 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100만건이라는 것이 해커가 이것을 다른 곳에 되팔거나 또는 정보를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쪽에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공중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말씀대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현재 노출된 현상이나 피해신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통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 '공중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더 강한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정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앞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사전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 건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자 세션ID 탈취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서 흔히 나온 수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해킹 기술로서의 수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세션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접속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는 기능을 보통 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해킹 기술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흔하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수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은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제재 건이 올라왔던 적은 없지요?

○ **황선철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 공격기법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메가스터디교육 건은 관리자인 신 모 씨가 이미 접속하고 있었고, 그런데 해커가 또 관리자 세션ID를 탈취해서 접속하고 있는 시간에 동 시간대에 해커도 접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 같은 세션 ID로 같은 시간대에 두 군데에서 접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차단을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규 위반사

항으로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관리자의 아이디를 사전에 탈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말 그대로 작업 중일 때 아이디를 빼낸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작업 중일 때 탈취한 것입니다.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탈취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접속 중일 때 아이디를 탈취하는 수법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자 아이디가 동시에 한 시스템에 복수로 접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시 해설서에 접속 최소시간을 통상 10~30분 이내, 접속하고 있을 수 있는 최소 시간도 정한 것입니다. 최대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장시간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했는데 통상적으로 관리자 정도 되면 업무 중에는 거의 접속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상 어떻습니까? 장시간 접속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점심시간 빼고 업무시간 중에는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접속시간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메가스터디교육 교육도 접속시간은 내부관리 정책으로 나름대로 60분으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신 모 고객팀장의 경우에는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매 1분마다 자동 로딩되어서 다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 항상 접속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소홀한 것입니다. 관리정책도 따르지 않고 별도 예외를 뒀고, 접속시간 제한도 고시에 나온 것보다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분을 지키지 않고 항상 자동으로 접속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장시간 접속하고 있을 때'를 평균적으로 보면 장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장시간 접속일 때 보안을 위해 관리자들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황선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시스템 운영하면서 장시간 접속이라고 하면 통상 DB의 관리자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처리자들이 해당되는데 DB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야간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작업을 통상 작업이 밤중에 일어나는데 보통 저녁 바쁜 시간이 지난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간까지 이 시간은 계속 관리자가 접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 관리자에 대해 외부에서 접속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업일지에 '오늘 몇 시부터 이러이러한 작업이 있습니다' 하고 전체 공지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장시간 접속 시에 해킹이나 외부 침입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황선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그 부분은 고시 제4조제10항에 최대 접속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고, 또 해설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통상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은 10분에서 30분 정도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만약에 그 시간만큼 해 주되, 접속이 완전히 끊겨야 하고 다시 재접속할 때는 처음에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듯이 처음 접속한 방법과 동일하게 들어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교육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분이 지나면 차단되기는 하는데 별도의 처음 접속하는 방법이 아닌 자동으로 1분 후에 다시 재접속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강조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경사유가 신고를 했고 조사에 협조도 했다, 주로 이것인데 먼저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감경을 많이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감경사유를 3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더 줄여서 사실은 해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이 없어서 저는 이것도 3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수준인 15% 정도만 감경해 주는 것이 어떤지 수정의견을 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추가적인 감경이 조사 협조의 경우 30%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20% 정도 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취지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중은 그렇다 할지라도 감경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뒤로 추가적으로 검토 작업하신 것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과징금 부과기준을 아직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없었는데 지금 별도 위원님들 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지 않고 향후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10% 이내로만 하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3기, 제4기 때 과징금 감경을 했을 때 주로 30% 하고 일부 과실이 높다면 20%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메가스터디교육은 저희가 30%, 20% 검토했다가 20% 감경으로 적용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고, 향후에는 10% 이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관들이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3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4기에 와서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서 제재할 때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감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감경사유는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경의 최대치를 30% 이내보다는 20% 이내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표철수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감경 20%를 15%로 하는 것이 문제없다면 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경사유는 더 엄격하게 앞으로도 적용을 계속 해야겠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10% 정도로 이번부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15%, 10% 그런 것이 무리가 따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번 제4기 들어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우 감경하지 않은 사례도 1건 있었고 20%를 감경해 준 사례가 2건 그리고 10% 감경한 사례도 1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15%나 10%로 다시 적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님들께서 정하시지요.

○ **이효성 위원장**

- 의견들 다 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취지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마지막 감경사유라고 한 것이 자진 신고와 협조인데 이것은 의무사항이지 그렇게 감경사유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예 추가 감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선에서 기왕에 20% 한 것을 완전히 무시는 못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전제조건이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일 것이고, 또 그러려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손쉽게 해킹당해서 그것이 보호가 안 되고 남용될 텐데 우리가 기왕에 그런 방침이 섰다면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추가 감경은 없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장님도 취지에는 다 동감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적 감경을 조사에 협조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 30%, 20% 감경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예 이것을 드러나서 추가적 감경 없이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가 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15%나 10% 정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형평성 차원에서 10% 정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결정해 주신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 20%, 10% 여기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10% 감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괜찮습니다. 또 고삼석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표 위원님 의견에 따라 가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방통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음에 3가지 항목을 유념해서 보겠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 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위원장께서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10%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10% 하는 것으로 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하고, 사전교육이나 불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만일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해서 사용하는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개인정보보호가 신뢰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개인정보보호 자체가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안건 내용 중 20% 추가 감경을 10% 추가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이 유사·중복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관계부처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증제도의 운영절차와 인증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부가 공동 고시(안)를 마련하고, 명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통위·행안부 소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과기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하게 되면 3개 부처 공동소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그간 감사원과 국회에서 두 제도의 통합성을 지적한 바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세 부처가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6월까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협의했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동 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인증제도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한글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영문으로는 ISMS-P입니다. 인증기준 및 인증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세부 102개 항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인증체계는 기본 80개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실시하되, 추가로 22개 개인정보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에 ISMS-P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밑에 통합인증마크도 개선하겠습니다. 보안을 상징하는 방패막을 주요 모티브로 하되, ISMS-P의 경우에는 P의 색깔을 달리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원 요건, 인증·심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방통위·행안부·과기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원 요건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총 합해서 6년 이상 보유하고, 이 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각 1년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증·심사기관 지정 관련해서는 통합 이후에 신규 인증·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고, 부처 공동의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시행일은 고시 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되,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이전 제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증취득기간은 기존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제도로 매년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인증제도 선택 시에는 그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심사원과 인증·심사기관 관련해서는 심사원은 자격전환 절차를 통과하도록 하고, 기존 인증·심사기관은 신규로 지정받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최종 고시(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9월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안건은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과기부의 ISMS 방통위의 PIMS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에도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드디어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고시가 마련되었으므로 이것을 보고하고 이대로 시행 여부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조금 전에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일에서부터 또 지금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이런 안건까지 다루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이 지난 5월부터 이미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전문인력 지정과 관련해서 자격요건을 종래와 달리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EU와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국제 추세에 맞추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교육기회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메가스터디교육 같은 경우에서도 봤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개인정보 관리 책임전문가 육성과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매년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만 의무교육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제 자격증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받게 되면 자격증 운영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일정한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도 DPO라는 것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법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담당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두어서 회사 내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 투자 예산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였는데, EU GDPR의 경우에는 임직원 개념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분 DPO 데이터보호책임자로 임명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 외부 직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되고 있지만 EU의 DPO는 상이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였는데 다 삭감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올해는 기재부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해서 저희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기술자격 제도 또는 이것을 국가기술 자격제도로 전환해서 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나 개인정보로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관계자 교육도 의무화시켜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정도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3분 폐회 】